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후보자의 학력에 관한 서류 조사 근거 마련 〉
■ 정성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154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후보자의 학력에 관한 서류 조사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성국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2. 3.
3. 회 부 일 : 2024. 12.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자신의 학력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국내·외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음.

그런데 후보자의 국내·외 학력은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 절차가 없어 허위 학력이 그대로 인정되어 공정한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알 권리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

이에, 후보자가 국내·외 학력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체 없이 학력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국내·외 학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 제15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후보자의 학력에 관한 서류 조사 근거 마련(안 제49조)

개정안은 후보자가 학력에 관한 서류 제출 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지체 없이 학력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⑭ (생략) <u><신 설></u>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⑭ (현행과 같음) <u>⑮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4항제6호에 따른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한글번역문 포함)를 제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학력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국내·외 학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사를 의뢰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학력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여 해당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u>
<u>⑮ 候補者の 登録申請書와 推薦書의 서식,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의 서식, 제출·회보받은 서</u>	<u>⑮ -----</u> <u>-----</u> <u>-----서</u>

류의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류의 공개방법, 국내·외 학력의 조사 의뢰절차,-----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
--	--

현행법에 따르면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선거일 전 24일이나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2.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公職選舉候補者 등의 財産公開)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公職選舉候補者の 兵役事項申告 및 公開)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4. 최근 5년간의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 자녀를 제외한다)의 소득세(「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제출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한다)에 관한 신고서. 이 경우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5.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
6.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하 “정규학력”이라 한다)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한글번역문을 첨부한다). 이 경우 증명서의 제출이 요구되는 학력은 제60조의3제1항제4호의 예비후보자홍보물, 제60조의4

의 예비후보자공약집,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에 한한다.

7.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와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력[선거가 실시된 연도, 선거명, 선거구명, 소속 정당명(정당의 후보자추천이 허용된 선거에 한정한다), 당선 또는 낙선 여부를 말한다]에 관한 신고서

또한, 현행법은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 경력(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이수한 학력), 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책자형 선거공보에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 중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외에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인적사항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책자형 선거공보 내 후보자 관련 게재 내용>

1. 재산상황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의 각 재산총액

2. 병역사항

후보자 및 후보자의 직계비속의 군별·계급·복무기간·복무분야·병역처분사항 및 병역처분사유[「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신고사항의 공개)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질병명 또는 심신장애내용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3.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연도별 납부액, 연도별 체납액(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한다) 및 완납시기[제49조(후보자등록 등)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원천징수소득세를 포함하되, 증명서의 제출을 거부한 후보자의

직계존속의 납부 및 체납실적은 제외한다]

4. 전과기록

죄명과 그 형 및 확정일자

5.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항

그런데, 후보자의 국내·외 학력 사항은 선거벽보, 선거공보에 게재되어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있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진위여부 확인 절차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¹⁾

이에, 개정안은 후보자가 학력에 관한 서류 제출 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되, 그 방법으로 학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알 권리를 보다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국내학위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및 학력검증기관 등의 조사 등으로 진위 여부 확인에는 시일이 지체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해외학위조회서비스는 모든 나라의 학위에 대해 조회할 수 없고, 학위조회 소요기간이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학위증명서 등에 대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접수하고 있다고 설명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해외를 포함한 학위 진위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기관은 한국연구재단으로 현재 한국연구재단은 해당 학위를 수여한 기관의 학위수여 자격 여부를 검증하고 있고, 대상국가는 미국을 포함한 24개국²⁾이며 조회비용은 1건당 38,000원이 소요되고 있음.

또한, 일반적으로 조회지원 서비스 처리기간은 1개월 이내이나, 상대국의 시스템 미비, 휴가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후보자 등록 시부터 선거일까지 기간 중(20~24일) 학위 조회 회신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학력 진위여부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선거기간 중 모든 후보자의 학력 검증을 완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국외 학력의 경우 검증할 수 있는 학력이 제한적인 점 등 법 집행상의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충분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

2)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대만,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오스트리아, 필리핀, 인도, 싱가포르, 러시아, 홍콩, 이스라엘, 벨기에, 핀란드(기타 국가 서비스는 추후 확대 예정)